

1. 개정이유

‘노유자(老幼者)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 등을 내용으로 「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26호, 2020.4.7. 일부개정, 2021.4.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 또한, 「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위임한 소음대책지역 경계 설정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지역 경계 설정 기준 신설 등(제2조의1 신설)

- 1) 소음대책지역을 지형, 토지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도시화 지역과 비도시화 지역으로 구분하고, 도시화 지역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경계를 설정하며, 비도시화 지역은 자연취락의 생활 형태를 감안하여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을 바탕으로 경계를 설정하도록 함.
- 2) 소음대책지역 경계설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 설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아파트 신축 허가 시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의 추가(제4조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아파트의 신축 허가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에 재건축사업을 포함하도록 함.

다.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주거용 시설에 대한 인용 조항 변경(제5조제1항)

라. 노유자 시설에 대한 전기료 일부 지원 기준 신설(제6조제1항제2호)
전기료 일부 지원 대상을 노유자 시설을 포함하여 각 목을 신설하여
명시하고,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유사한 유치원에 대한
전기료 지원 금액의 평균적인 수준 등을 감안하여,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월 60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별로 지원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1) 노유자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대책지역은 지형, 토지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도시화 지역과 비도시화 지역으로 구분할 것
2. 도시화 지역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
3. 비도시화 지역은 자연취락의 생활 형태를 감안하여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을 바탕으로 경계를 설정할 것

② 지방항공청장은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중 “「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제3호”를 “법 제8조제1항
제3호 나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냉방시설 전기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가. 학교의 경우 6월부터 9월까지 월 500만원 범위에서 학교별로 지원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교에 포함)

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주민 주거용 시설(이하 “주민 주거용 시설”
이라 한다)의 경우 6월부터 9월까지 월 5만원 범위에서 세대별로
지원

다. 법 제8조제1항 다목의 노유자 시설의 경우 6월부터 9월까지 월
60만원 범위에서 시설별로 지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과 제6조제1항제2
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2조의1(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소음대책지역은 지형, 토지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도시화 지역과 비도시화 지역으로 구분할 것</u> <u>2. 도시화 지역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u> <u>3. 비도시화 지역은 자연취락의 생활 형태를 감안하여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을 바탕으로 경계를 설정할 것</u> <u>② 지방항공청장은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u> <u>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u>

제3조(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u>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종 구역을 예상 소음영향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 3. (생략) 제4조(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①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u>재개발사업</u>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	<u>사항 이외에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u> 제3조(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u>영</u> -----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u> ----- ----- ----- ----- ----- -----
---	--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공항소음대책사업 시행 대상)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6조(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냉방시설 전기료는 학교에 대해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월 500만원, 제5조제1항 각 호의 주민 주거용 시설(이하 “주민 주거용 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월 5만원 범위에서 냉방시설 전기료를 세대별로 지원한다.

-----.

제5조(공항소음대책사업 시행 대상)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 나
목-----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냉방시설 전기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가. 학교의 경우 6월부터 9월
까지 월 500만원 범위에서
학교별로 지원(병설유치원
의 경우에는 학교에 포함)

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주민
주거용 시설(이하 “주민
주거용 시설”이라 한다)의

② (생 략)	<u>경우 6월부터 9월까지 월 5만원 범위에서 세대별로 지원</u> <u>다. 법 제8조제1항 다목의 노 유자 시설의 경우 6월부터 9월까지 월 60만원 범위에 서 시설별로 지원</u> ② (현행과 같음)
----------------	---